

[서식 예] 이혼무효확인 청구의 소

소 장

원 고 ○ ○ ○(○○○)

1900년 ○월 ○일생

등록기준지 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

주소 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 (우편번호)

전화 ○○○ - ○○○○

피 고 △ △ △(△△△)

1900년 ○월 ○일생

등록기준지 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

주소 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 (우편번호)

전화 ○○○ - ○○○○

이혼무효확인청구의 소

청 구 취 지

- 1.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○○. ○. ○○. ○○시 ○○구청장에게 신고하여 한 이 혼은 무효임을 확인한다.
- 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라는 판결을 구합니다.



청 구 원 인

- 1. 원고와 피고는 2000. O. OO. 혼인 신고한 법률상 부부로서 이후 혼인생활을 유지해 오던 중 2000. O월부터 피고가 잦은 외박을 하더니 아예 2000. O월에는 연락도 없이 집을 나가버렸습니다.
- 2. 원고는 이미 임신 3개월째라 피고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며 지내던 중 20○○. ○.경 피고로부터 전화가 걸려왔고 다른 여자와 동거하고 있으니 이혼해 달라고 요구하였는 바, 원고는 임신사실을 이야기하며 이혼은 할 수 없다고 하였고, 이후에도 피고로부터 몇차례 이혼을 종용하는 전화가 걸려왔으나 같은 이유로 거절하였으며 이후 피고가 임의로 협의이혼신청서를 가정법원에 접수시켜 원고는 법원에서 통보한 날짜인 20○○. ○. ○. 출두하여 이혼의사가 없음을 밝히기도 하였습니다.
- 3. 20 ○ . 원고는 피고의 아이를 출산하였고 아이의 출생신고를 위해 20 ○ . 구청에 갔다가 원고와 피고간에 협의이혼 신고(20 ○ ○ ○ ○ ○ 구청장 접수)가 되어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.
- 4. 원고는 전혀 모르는 사실이었으므로 협의이혼신고시 제출된 서류들을 열람한 결과,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이 교묘히 위조되었음을 확인하였고, 이에 피고를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로 고소해 둔 상태입니다.
- 5. 이와 같이 원고와 피고의 협의이혼은 원고가 전혀 모르는 사실이고 원고는 피고와 이혼할 의사가 없기 때문에 〇〇구청장에게 신고한 원고와 피고의 협 의이혼은 무효이므로 청구취지와 같이 본 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.

입 증 방 법

1. 갑 제1호증 혼인관계증명서(원고)

1. 갑 제2호증 혼인관계증명서(피고)



1. 갑 제3호증 협의이혼의사확인서 사본

1. 갑 제4호증 고소장

첨 부 서 류

1. 위 입증방법 각 1통

1. 소장부본 1통

1. 납 부 서 1통

2000년 0월 00일

원 고 ㅇㅇㅇ(인)

○ ○ 가 정 법 원 귀 중



제출법원	※ 아래참조	관련법규	가사소송법 제22, 23조
제기권자	(가사소송법 제23조) ·당사자 ·법정대리인 ·4촌 이내의 친족		
상 대 방	 (가사소송법 제24조) ·부부의 일방이 혼인의 무효나 취소 또는 이혼무효의 소를 제기할 때에는 배우자를 상대방으로 함 ·제3자가 제1항에 규정된 소를 제기할 때에는 부부를 상대방으로 하고, 부부중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그 생존자를 상대방으로 함 ·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대방이 될 자가 사망한 때에는 검사를 상대방으로 함 		
제출부수	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		
불복절차 및 기간	· 항소(가사소송법 제19조제1항) ·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이내(가사소송법 제19조제1항)		
비용	·인지액:○○○원(☞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참조) ·송달료:○○○원(☞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참조)		
이혼무효 사 유	·당사자간에 협의에 따른 이혼신고가 수리되어 있으나 당사자의 쌍방이나 일방에게 이혼의사가 없는 경우		

※ 제 출 법 원

- 1.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내에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
- 2. 부부가 최후의 공통의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내에 부부중일방의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
- 3.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부부의 일방이 타방을 상대로 하는 때에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소재지, 부부의 쌍방을 상대로 하는 때에는 부부중 일방의 보통재판적소재지의 가정법원
- 4.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생존한 타방의 보통재판적소재지의 가정법원
- 5. 부부 쌍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부부중 일방의 최후 주소지의 가정법원